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영리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인권법에서 차별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

*영리대학, 직업교육학교 및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인권법에서 '교육기관'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S.7151/A.7390)*

Kathy Hochul 주지사가 금일 '교육기관'을 다루는 정의를 갱신함으로써 영리대학, 직업교육학교 및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인권법에서 차별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S.7151/A.7390)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모든 학생은 교실에서 부당한 괴롭힘 및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이 법안이 가급적 많은 뉴욕의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차별 또는 괴롭힘을 관용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십년간,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는 공립사립 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생긴 차별로 인한 불편사항들을 접수, 조사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주에서 영리대학에 다니는 것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인권법 규정이 공립사립 비영리 교육기관은 물론, 영리대학, 직업교육학교,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학교에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뉴욕주는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 상원의원인 Toby Ann Stavi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차별 및 괴롭힘은 우리 학교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상식적인 법안은, 공립사립 교육기관에서 모든 뉴욕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행 법을 수정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마땅히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며, 차별 및 괴롭힘에서 보호된다는 것을 알고서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의원인 Jaime William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차별 또는 괴롭힘이 없는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뉴욕주 인권법 아래 구제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